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28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김위상 · 김선교 · 고동진
구자근 · 이인선 · 김소희
김형동 · 박성민 · 김미애
정동만 · 김성원 · 우재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라는 용어는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또, 국제노동기구나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절(Labor Day)’ 또는 이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기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적 보편성과 노동 인권 인식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자 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